

문서번호	인사과-26252
결재일자	2014. 10. 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사지원팀장	인사과장	행정국장
협 조	인사기획팀장 기술인사팀장 성과관리팀장		

2014년 하반기 경력 및 가점평정 계획



2014. 10.

행 정 국
(인 사 과)



사전 검토항목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 : 유 <input type="checkbox"/> () 무 ■ ● 이해당사자 : 유 <input type="checkbox"/> () 무 ■ 		
고려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가 : 유 <input type="checkbox"/> () 무 ■ ● 옴브즈만 : 유 <input type="checkbox"/> () 무 ■ 		
법령 및 기타 고려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규정 : 교통 <input type="checkbox"/> 환경 <input type="checkbox"/> 재해 <input type="checkbox"/> 기타 ■ (지방공무원법 등)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input type="checkbox"/> 노동인지 <input type="checkbox"/> 균형인지 <input type="checkbox"/> 홍보 <input type="checkbox"/> 취약계층 <input type="checkbox"/> 성인지 <input type="checkbox"/> 빗물순환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input type="checkbox"/> 디자인 <input type="checkbox"/> 갈등발생 가능성 <input type="checkbox"/> 유지관리 비용 <input type="checkbox"/> 바른 우리말 <input type="checkbox"/> 인권 <input type="checkbox"/> 무 □ 		
타자원의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부처 : 유 <input type="checkbox"/> () 무 ■ ● 민간단체 : 유 <input type="checkbox"/> () 무 ■ ● 기업 : 유 <input type="checkbox"/> () 무 ■ 		
관계기관 및 단체협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기관 : 유 <input type="checkbox"/> () 무 ■ ● 민간단체 : 유 <input type="checkbox"/> () 무 ■ ● 시산하기관 : 유 <input type="checkbox"/> () 무 ■ 		
언론홍보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보계획 : 보도자료 <input type="checkbox"/> 기자설명회 <input type="checkbox"/> 현장설명회 <input type="checkbox"/> 기획보도 <input type="checkbox"/> 기고문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 없음 ■ 		

<목 차>

1. 경력평정 개요	1
2. 경력평정	
1. 평정점 및 평정기간	3
2. 환산경력기간 계산	5
3. 경력평정점수 산출	7
3. 가점평정	
1. 자격증 가점	8
2. 외국어 가점	9
3. 특수근무지경력가점	10
4. 교류 가점	11
5. 실적 가점	11
4. 행정사항	12
● 경력 및 가점평정 참고사항	15
● 경력평정 평정자 및 확인자	18
● 공무원 경력구분 개요	19
● 일반직공무원의 가점대상 자격증 종류와 가점	21
● 경력평정 관련 법령	27

2014년 하반기 경력 및 가점평정 계획

인사관계 법령에 의거 2014년도 하반기 경력 및 가점평정을 실시하고 승진 등 인사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1 평정개요

근거법령

-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제25138호, '14.2.7)
-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안전행정부령 제37호, '13.12.12)
-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24893호, '13.12.12)

평정대상

- 평정기준일 현재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한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연구사, 지도사

* 일반직 승진소요 최저연수(지방공무원임용령 제33조)

직급	5급	6급	7급 및 8급	9급
최저연수	4년 이상	3년 6월 이상	2년 이상	1년 6월 이상

* 단, 연구지도직(연구사 · 지도사)의 승진소요 최저연수는 5년임

☞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기준일: 2014.10.31.

평정점

- 경력평정 : 최고 30점
- 가점평정 : 최고 3.24점(자격증 · 외국어 · 특수지 근무경력 · 실적 · 교류가점)

평정자 및 확인자

- 본 청 : 평정자 - 담당관·과 주무담당사무관, 확인자 - 담당관·과장
- 사업소 : 불임 2 참조 ※ 기관별(3급이상 사업소 등) 평정자 및 확인자 지정

평정방법

- 대상자 본인이 직접 e-인사마당의 『경력 · 가점 평정표』 점수 확인 · 출력
⇒ 평정자 및 확인자 반드시 확인(서명 또는 날인) 후 제출
- 파견 · 지원근무중인 공무원의 경우 원 소속기관(부서)에서 평정

추진일정

경력 및 가점평정 계획 송부	' 14. 10. 17(금)
↓	
e-인사마당 확인 개시 (본청 및 자치구)	' 14. 10. 27(월)
↓	
수정요구사항 수합·제출[실·국]	' 14. 11. 3(월)
↓	
수정요구사항 확인 · 정정 및 확정통보[인사고]	' 14. 11. 17(월)

2

경력평정

경력평정 처리절차

경력평정 가능기준설정

: 임용권자가 승진소요 최저연수 이상의 범위내 자율적으로 결정
(계급별 평균 승진소요연수를 참작)



경력평정대상기간계산

: 경력평정기간 중 실제 직무에 종사한 기간을 경력별로 구분
하여 확정 (경력평정기간 - 경력평정대상제외기간)



환산경력기간계산

: 경력별 평정대상기간 × 환산율
(경력별 환산경력 합산 = 총환산경력월수)



경력평정점계산

: 총환산경력월수 × 계급별 월경력평정점수

경력평정점 : 30점 만점

경력평정 기간

- 경력평정 가능기간 및 경력평정 만점도달기간

직급	평정가능기간	만점도달기간	비고
5급	최근 11년	8년	
6급 (연구·지도·사포함)	최근 9년	6년	
7급 이하	최근 7년	4년	

* 관련근거 : 「근무성적평정 반영확대 등 인사제도 개선계획」, ('08.3.11.)

경력평정기간 조정(연장) 변경예고(경력평정 기간조정 계획, '14.4.16)

- 변경내용 : 경력평정 만점도달기간을 평균 승진소요연수를 고려하여 현재의 계급별 기간보다 3년씩 연장

직급	가능기간	만점도달기간	평정점(월)	
5급	11년→14년	8년→11년	7년이내 경력	7년초과 경력
			0.35→0.34	0.05→0.03
6급	9년→12년	6년→9년	6년이내 경력	6년초과 경력
			0.42→0.40	없음→0.04
7급이하	7년→10년	4년→7년	5년이내 경력	5년초과 경력
			0.63→0.48	없음→0.05

- 시행시기 : '15년 상반기 경력평정부터 적용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6조의3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경력평정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된 기준은 그 변경일의 1년 후부터 적용

○ 경력평정 대상기간

- 위 경력평정가능기간 중 평정대상자가 실제 직무에 종사한 기간
※ 시간선택제근무는 해당기간이 해당계급에서 1년 초과시 초과기간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입
- 휴직 · 직위해제 · 정직기간 등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경력 평정에 산입하지 아니함(경력평정 제외기간)
- 다만, 아래 기간은 실제 직무에는 종사하지 않았으나 직무종사기간으로 인정하여 경력평정에 산입

경력평정대상 제외기간 중 경력평정대상기간 인정범위
(임용령 제31조의6제2항 및 연구·지도직 규정 제19조제2항)

▶ 휴직·직위해제 기간의 100%를 인정하는 경우

-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
-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해 징집 또는 소집되어 휴직한 기간
- 노동조합전임자로 종사 또는 기타법률에 따른 의무 수행을 위해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
- 국제기구·외국기관·국내외대학·국내외연구기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민간기업 등에 임시로 채용될 때
-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자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었을 때 휴직한 기간(단,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이 넘는 경우에는 최초 1년까지만 평정하고 셋째 자녀부터는 1년이 넘는 경우에도 휴직기간 전부로 평정함)
- 파면·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 요구에 의하여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이거나 인사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의 그 직위해제기간

- 형사사건으로 기소됨으로 인하여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의 그 직위해제기간

▶ 휴직기간의 50%를 인정하는 경우

- 해외유학으로 인하여 휴직한 기간

□ 환산경력기간 계산

○ 계산방법

- 경력평정대상기간(실제 근무기간) 경력 × 해당 환산율

※ 해당 공무원의 경력평정가능기간 중 경력평정 제외기간을 뺀 경력평정대상기간 우선 산정

- 경력평정 대상에 해당되는 실제 근무기간에 경력환산율표에 의한 환산율을 각각 곱하여 「경력별 환산경력기간」 산출 후,
⇒ 각 경력별 환산경력기간을 합산하여 「총 환산경력기간(월단위)」 산출
- 환산경력기간은 경력평정 대상이 되는 기간의 연·월·일에 해당환산율을 곱하여 산출하되, 1월은 30일로 계산하고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함
- 환산경력월수는 총환산경력기간을 월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함

○ 경력별 환산율(지방공무원임용령 별표3 및 지방연구·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4)

- 공무원경력

▶ 환산률

구 분	갑경력	을경력	병경력	정경력
환산율	100%	80%	60%	30%

▶ 공무원경력구분

구 分	동 일 직 군		다 른 직 군
	동 일 직 렬	유 사 직 렬	
상 위 계 급	갑	을	병
동 일 계 급	갑	을	병
직근하위계급	병	병	정

※ 공무원 직종개편 관련 관리운영직군 전환, 신설직렬 전환, 전환 후 전직, 전담직위 지정이 해제된 경우는 “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을 따름

▶ 공무원 경력구분 개요(지방공무원임용령 제31조의6 제2항 관련 별표3) : [붙임 3 참조]

▶ 기구 개편 등에 따른 경력평정의 특례(지방공무원임용령 제31조의7)

- 기구 축소 또는 정원 감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남는 현원의 해소를 위하여 전직하여 재배치된 공무원에 대한 경력을 평정할 때에는 전직 전의 직급 및 그 바로 아래 직급의 경력은 전직 후의 직급 및 그 바로 아래 직급의 경력으로 봄

- 기타경력

▶ 환산률(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 제2항 관련 별표3 참조)

구 분	박사학위 소지경력		자격증 소지경력		공공기관·민간기업등의 경력
	5급	6급이하·연구사지도사	해당직급 바로 위 직급의 경력경쟁임용기준 초과경력	해당직급의 경력경쟁임용기준 초과 경력	
환 산 율	80%	100%	100%	80%	60%

기타 경력 평정시 주의사항

- 1) 기타경력은 최초로 임용된 계급에 재직하는 동안에 한하여 평정하며,
- 2) 이에 해당하는 경력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평정하되, 경력기간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중 본인에게 유리한 것 1개만 평정
- 3) 「자격증 소지경력」은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의하여 경력경쟁임용된 자에 한하며, 「공공기관·민간기업 등 경력」은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의하여 경력경쟁임용된 자에 한하여 평정함

○ 경력구분에 따른 환산경력기간 산출(예시)

경력구분	병(60%)	을(80%)	갑(100%)
평정대상기간	2003. 5. 1 – 2007. 3. 8 46월 8일	2007. 3. 9 – 2012. 5. 8 62월	2012. 5. 9 – 2014. 10. 31 29월 23일
환산경력기간	$(46\text{월} \times 0.6) + (8\text{일} \times 0.6)$ $= 27.6\text{월} + 4.8\text{일}$ $= 27\text{월} + (0.6\text{월} \times 30) + 4.8\text{일}$ $= 27\text{월 } 22.8\text{일}$	$62\text{월} \times 0.8 = 49.6\text{월}$ $= 49\text{월} + (0.6\text{월} \times 30)$ $= 49\text{월 } 18\text{일}$	29월 23일
환산경력	27월 23일 + 49월 18일 + 29월 23일 = 105월 64일		
총 환산경력월수	= 107월	※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미산입	

경력평정점수 산출

- 계산방법 : 환산경력기간(월단위) × 해당 월경력평정점수

※ 총 환산경력기간을 월단위로 계산하고 해당 월경력평정점을 곱하여 산출

- 만점도달기간별 월경력평정점(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16조제3항 별표2)

직급	평정가능기간	만점도달기간	환산경력월수	평정점(월)	비고
5급	최근11년	8년	최근84월	0.35	
			84월이전	0.05	
6급 (연구·지도사 포함)	최근 9년	6년	최근72월	0.42	
			72월이전	없음	
7급 이하	최근 7년	4년	최근60월	0.63	
			60월이전	없음	

경력평정 평가 예시(5급 공무원의 경우)

- 경력평정가능기간을 11년, 만점도달기간을 8년으로 정했을 때 -



- 경력평정가능기간 : '03. 11. 1부터 '14. 10. 31까지 11년임
 - 경력평정대상기간(경력평정가능기간 - 경력평정 제외기간)
 - **갑경력** : 6년 2월(유학휴직기간(1/2)과 질병휴직기간 제외)
 - ▶ 8년 2월('06.9.1~'14.10.31) - 1년[('06.11.1~'08.10.31)/2] - 1년('09.11.1~'10.10.31)
 - **병경력** : 2년 10월('03.11.1~'06.9.1)
 - 환산경력기간(경력평정대상기간 × 경력환산율)
 - **갑경력** : 6년 2월(100% 인정) - **병경력** : 20월(60% 인정)

구 분	경력평정대상기간	환산경력기간	환산율
갑경력	6년 2월	74월	100%
병경력	2년 10월	$34\text{월} \times 0.6 = 20.4\text{월}$ $\Rightarrow 20\text{월} + (0.4\text{월} \times 30) = 20\text{월 } 12\text{일}$	60%

총 화사경력기간 : 74월 + 20월 \Rightarrow 94월(화사경력월수)

- 환산경력월수 : 94 (경력에 따른 환산경력기간을 더한 기간)

$$\text{경력평정점} = (84 \times 0.35) + (10 \times 0.05) = 29.9$$

* 월경력평정점 조건표에서 만점도달기간 8년에 해당하는 0.35/0.05점을 선택하여 각각의 경력(84월 이전경력과 이후경력)에 반영

3

가점평정

가점의 종류 및 상한점

가점항목	계	직무관련자격증	외국어가점	특근무경력	실적가점	교류가점	기타
최고점	3.24	0.5	0.25	0.63	1.5	0.36	-

※ 실적가점 중 새서울전문인 가점은 2013.10월부터 가점대상에서 제외(단, 기존 반영점수는 인정)

가점의 종류별 평정방법

자격증 가점

○ 가점대상 자격증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자격증

▶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23조 제1항 제2호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45조 제1항

▶ 대상자격증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별표23에 규정된 자격증 : [붙임 4 참조]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제1항 관련 별표1의 전산직렬 5급의 행정직렬 통합으로 『기술사 (정보관리, 전자계산조작응용,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자격증은 전산6급 이하의 상위계급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으로만 인정

사회복지사 자격증 가점적용 변경(서울특별시 인사규칙 개정, '13.8.16)

○ 변경내용 : 행정직렬의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취득 후 직급별로 2년 이상 해당 직무에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가점을 부여

※ 해당직무는 “여성가족정책실, 복지건강실, 시립병원”의 업무관할로 한정

○ 시행일 : 2014. 7. 1

○ 경과조치 : 개정규정 시행일('14.7.1) 이전 취득한 사회복지사 자격증에 대한 가점 적용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일로부터 1년간 종전의 규정에 따름

○ 자격증의 등급별 가점(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3조 별표3)

구분	평점
해당 직렬의 해당 계급 또는 상위계급에서 인정하는 자격증	0.5
해당 직렬의 바로 하위계급에서 인정하는 자격증	0.25

자격증 가점평정 주의사항

- 자격증 가점의 제한
 - ▶ 기타 직무관련 자격증이 2개 이상인 경우 그 중 유리한 것 하나만 평정
 - ▶ 공무원으로 재직함으로써 취득한 자격증은 가점평정 제외
- 채용시 응시 요건이 되는 자격증 가점 추가
 - ▶ 관련근거
 - 직무관련 자격증 가점평정 개선계획('05.12.21)
 - 직무관련 자격증 가점평정 개선에 따른 세부실시계획('06.10.19)
 - ▶ 대상 : 특별임용시험의 필기시험 면제,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또는 전직 시험에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2개 이상 보유한자
 - ▶ 대상자격증 : 직무관련 자격증(서울시 인사규칙 별표23)
 - ▶ 가점부여(개선 내용)
 - 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최하위 자격증을 임용시 사용한 것으로 보고, 기타 동종의 상위 자격증 또는 다른 종류의 자격증에 대해 가점부여
- ※ 단, 직무관련 자격증이 단일종류인 경우 해당직렬에 대해서는 직무관련 자격증가점 미적용 (사회복지직의 사회복지사 자격증, 사서직의 사서자격증 등)

외국어 가점

○ 시험종류 및 성적에 따른 평정점(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45조제2항 별표24)

- '09.1.1자부터 자발적 어학능력 향상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성적 단계별(3단계) 가점 차등부여

외국어	어학능력검정시험	성적별 평정점		
		0.25점	0.15점	0.05점
영어	TOEFL	CBT 197점이상	197점미만~183점이상	183점미만~163점이상
		IBT 71점이상	71점미만~65점이상	65점미만~57점이상
	TOEIC	700점이상	700점미만~640점이상	640점미만~595점이상
	TEPS	625점이상	625점미만~512점이상	512점미만~472점이상
	TOSEL (ADVANCED)	565점이상	565점미만~483점이상	483점미만~373점이상
	서울대, 한국외국어대, 부산외국어대 어학능력검정	60점이상	60점미만~55점이상	55점미만~51점이상
기타 외국어	서울대, 한국외국어대, 부산외국어대 어학능력검정	60점이상	60점미만~55점이상	55점미만~51점이상

※ 한국외국어대(FLEX) 시험 성적은 1000점 만점 시험에 한해 100점 만점으로 환산·적용

○ 가점부여 기준(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23조제2항 및 제3항)

- 외국어능력검정시험성적이 20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언어만 인정
- 외국어능력검정시험성적에 대한 가점은 그 확인서의 유효기간 중에 한함

특수근무지경력 가점

○ 관련규정

-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4조 제1항
-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특수지근무수당)
- 지방공무원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항(별표2)
-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제5조(별표5)

○ 특수지별 가점평정점 : 최고 0.63점까지만 반영

특수지별	가점
· 특지·갑지(국가공무원 “가”지·“나”지) 근무경력	1월마다 0.025점
· 을지(국가공무원 “다”지) 근무경력	1월마다 0.018점
· 병지(국가공무원 “라”지) 근무경력	1월마다 0.013점

○ 대상경력 및 기관

- 대상경력 : 당해계급에서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지의 해당기관에서 근무한 경력(국가공무원 재직 중 특수지근무경력도 인정)

- 대상기관

구분	가점(월)	대상기관 및 대상자	대상기간	비고
갑지	0.025	◦ 서북병원 환자의 간호, 검사, 감시 등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당해계급	
을지	0.018	◦ 서북병원 갑지대상자를 제외한 공무원 ◦ 은평·어린이병원 병원 내에서 환자의 간호, 검사, 감시 등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여성보호센터, 아동복지센터 산모, 영아 등 환자를 직접 진료하거나 수용생과 함께 숙식하는 공무원	당해계급	
병지	0.013	◦ 은평·어린이병원 환자의 진료를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여성보호센터, 아동복지센터 을지대상자를 제외한 공무원	당해계급	

※ 시립병원 근무 관리운영직의 특수지근무가점

간호조무 외 상위등급의 특수지가점(서북병원 갑지, 은평·어린이병원 을지) 적용대상 관리운영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업무분장 및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내역 등 증빙자료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함

○ 경력월수 계산방법

- 정기평정 기준일 현재까지의 근무경력을 기준으로 하여, 15일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하며, 휴직·직위해제·정직기간은 제외

교류 가점

○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24조 제2항
-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운영지침(안행부 예규 제1호, '13.3.25)
- 시·자치구 인사교류 및 통합인사 추진계획(인사과-17124, 2010. 8.13)

○ 가점부여기준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5제2항에 따른 인사교류계획에 의거 사전교류직위로 지정된 직위에 교류(파견)임용된 공무원(4~6급 일반직)이 1년이상 근무한 경우 최초 교류임용된 날로부터 가점부여
- 파견교류에 따른 교류가점은 당해 직급에 한해 적용되며, 매월 0.01점, 최고 0.36점 반영
※ 15일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함
- 개인의 희망이나 귀책사유로 1년 이내 복귀시에는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

실적 가점

○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25조의2(실적 가산점)
- 2014 상반기 실적가점평가 추진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72호, '14.3.5)

○ 가점반영 : 승진후보자명부에 최고 1.5점 범위내에서 직접반영

- 사업실적 및 개인실적 심사결과에 따라 가점 부여
- 기 수여받은 성과포인트는 30%만 실적가점으로 인정(성과포인트의 실적가점 환산비율 등을 「2014 하반기 실적가점평가 추진계획」 참조)

◆ 실적가점 승진후보자명부 반영기준

구 分	반영기간	반 영 비 율			
		최근 1년이내 실적가점의 평균	최근1년전 2년이내 실적가점의 평균	최근2년전 3년이내 실적가점의 평균	최근3년전 4년이내 실적가점의 평균
일반직 연구지도직	5급	최근 4년	25%	25%	25%
	6급	최근 3년	34%	33%	—
일반직	7~8급	최근 2년	50%	50%	—
일반직	9급	최근 1년	100%	—	—

※ 기간별로 산출한 가점은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각각 반올림한 후 합산

- 확인방법 : '14.11월초 실적기점(사업실적, 개인실적) 심사 종료 후 e-인사마당 확인
 - e-인사마당 → 나만의 쉼터(My 실적가점) → 개인별 취득점수 확인

4

행 정 사 항

□ 평정내용 확인 철저

- 확인기간 : '14. 10. 27(월)부터 확인
- 확인대상 : 승진소요 최저연수 경과자만 평정내용 공개
- 확인내용
 - 관련규정을 숙지하여 환산경력 평정기간 · 평정점을 정확히 계산
 - 제외경력의 포함여부, 자격증 및 외국어 가점 누락여부 등 직접 확인
 - 1년 이상 육아휴직자의 경우 육아대상 자녀를 각각 구분하여 평정
(자녀 1명당 최초 1년까지만 평정하되, 셋째부터는 휴직기간 전부 평정함)

○ 확인방법

- e-인사마당 → 나만의 쉼터 → My 경력평정 → [확인] 클릭
- 본인 평정점 확인 후 평정표 프린트 → 평정자 및 확인자 서명 또는 날인
 - ▶ 이의 없는 경우 : 주무부서에서 평정표 수합·보관
 - ▶ 이의 있는 경우 : 인사부서에 평정표 제출(증빙자료는 스캔 첨부)

○ 오류 평정내용 처리

- 오류내용이 있는 경우 「평정표」에 붉은 글씨로 줄을 긋고 정정내용을 기재하여 자격증 등 증빙자료를 원본 스캔하여 첨부 제출

□ 자치구별 경력평정 철저

○ 통합인사 직렬 경력 및 가점평정 철저

- 시 · 구 통합인사 직렬(전산직 7급이하 · 기술직군 해당직렬)의 경우 경력 및 가점평정을 시의 기준을 준용하도록 방침을 수립하여 시행
- 자치구별로 인정하는 직무관련 자격증은 반드시 해당여부를 대조 · 확인하여 가점 부여 및 전산입력
- 육아휴직 경력을 인정받기 위해 육아휴직 대상이 되는 자녀를 인사 전산 시스템 육아탭에 반드시 등록('14.10.23한 입력 완료)
- 자체 평정하는 행정 · 관리운영직군 및 기술직군의 위생 · 간호 조무 · 시설관리 · 운전 직렬에 대하여 인사전산 경력평정 프로그램 개별 수행(경력평정 계산 자치구별 수행)

※ 근거방침 : 경력평정 프로그램 개발 및 자치구 권한 부여(인사과-2680호, 2009. 4. 22) 참고

□ 평정결과 수합 제출

- 시(본청 · 사업소) : 실 · 국 · 본부별로 주무부서에서 수합 제출
 - 제출기한 : 2014. 11. 3(월)까지
 - 제출물
 - ▶ 국별 총괄표(엑셀서식 : 붙임) : 수정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제출
 - ▶ 수정요청 경력 · 가점 평정표 : 평정자 및 확인자 확인(서명 또는 날인) 후 제출
 - 제출방법 : 행정직군, 기술직군, 관리운영직군으로 구분 · 편철하여 제출
- 자 치 구 : 2014. 11. 17(월)까지 자체처리(전산수정입력 철저)
 - 자치구별로 기 제출한 근무 · 경력평정 등 기준 조사표는 향후 변동사항 발생 시 제출

- 불 임 :**
1. 경력 및 가점평정 참고사항
 2. 경력평정 평정자 및 확인자
 3. 공무원 경력구분 개요
 4. 일반직 공무원의 가점대상 자격증 종류와 가점
 5. 경력평정 관련 법령
 6. 경력 · 가점평정 처리결과서식

불임 1

경력 및 가점평정 참고사항

1. 정기 승진후보자 명부작성

- 작성 기준일 : 매년 4.30자 및 10.31자
- 승진후보자 명부상 경력평정 반영비율
 - 근무평정 : 경력평정 = 70% : 30% ('08년이후 변경 없음)

2. 교육훈련시간의 승진반영(상시학습)

○ 교육훈련시간의 승진임용 반영방법

-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 미충족시에는 승진심사 또는 승진시험 응시 대상에서 제외(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시행령 제7조 및 지방공무원 교육 훈련 운영지침)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 [안전행정부예규 제63호, 2014.1.1.]

※ 교육훈련시간 미충족자를 승진심사 등의 대상에서만 제외할 뿐이며, 승진후보자 명부에서 삭제하는 것은 아님. 따라서 교육훈련 미충족자를 승진심사 등에서 제외하는 경우에도 배수범위 밖의 상위 순위자를 심사대상으로 추가하는 것은 아님

○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

- 서울시 연간 의무적 교육훈련 기준시간

적 용 대 상	연도별 학습 목표시간					
	'08년	'09년	'10~'11년	'12년	'13년	'14년
2~3급 (기준 별정·계약직 국장급 포함)	30시간	40시간	50시간	30시간	30시간	-
4급 (기준 별정·계약직 과장급 포함)	40시간	50시간	60시간	50시간	50시간	-
5급이하 일반직, 임기제공무원 (기준 별정직,계약직 포함)	60시간	80시간	100시간	80시간	80시간	80시간
관리운영 직군	사무운영 직렬	60시간	80시간	100시간	80시간	80시간
	사무운영외 직렬	20시간	20시간	30시간	30시간	30시간

※ 관련공문 : 2014년 상시학습제도 운영계획(인력개발과-2105호, 2014. 2. 7)

-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 산출방법(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별표1)

산출기준일 현재 당해계급에서의 전체 교육훈련이수시간이
 「당해계급 근무연수 × 연간 교육훈련기준시간」 을 충족하여야 함

- ▶ 산출기준일 : 승진심사일 또는 승진시험 응시대상자 결정일이 속한 달의 전전달 말일 현재
- ▶ 실적 교육훈련시간의 산출
⇒ 필요 교육훈련시간 산출기준일까지의 실적 교육훈련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미충족자의 경우는 승진심사일 또는 승진시험 응시대상자 결정일 전일까지의 교육훈련시간 합산 가능
- 교육훈련기관(위탁포함) 교육이수 의무화 : 전체 학습목표시간 중 30%이상
- ▶ 집합교육 의무이수시간 지정('13.7.1 시행) : '13년 7시간 이상, '14년 14시간 이상
(관리운영 직군중 사무운영외 직렬은 7시간)
- ⇒ **승진심사시 교육훈련시간 산정기준에 반영**
(※'08년 이수실적부터 합산하여 적용, 미충족시 심사대상 제외)

※ 직급별 리더쉽 집합교육 의무이수 : '13년 예고기간을 거쳐 '14년 하반기부터 단계적 시행

【승진심사시 교육훈련시간 산정기준 적용사례】

(6급 ○○○의 아래 조건하에 교육훈련시간 충족 여부)

◆ 학습목표시간 및 교육훈련기관 의무이수시간

- 학습목표 기준시간 : '08년 60시간, '09년 80시간, '10~'11년 100시간, '12년 80시간, '13년 80시간
※ 교육훈련기관 의무 이수비율 ('08~'09년 20%, '10년 이후 30%)
- 인사정보 : 육아휴직('08.3.1~'09.2.13), 병가('10.2.1~'10.3.31)
- 연도별 인사정보 반영한 학습목표시간 - 소수점 이하 절사함

구분	근무년수 산 출	학습목표시간 산출 (근무년수×연간 기준시간)	교육훈련기관 의무이수시간 (목표시간×의무비율)	비 고
계	61개월	443시간	124시간	-
'08년	2개월(1.1~2.28)	전체(2월÷12월)×60h = 10h	10시간×20% = 2h	육아휴직 10개월제외 ('08.3.1~'09.2.13)
'09년	11개월(2.14~12.31)	전체(11월÷12월)×80h= 73h	73시간×20% = 14h	15일 이상 1개월 적용
'10년	12개월 (1.1~12.31)	전체(12월÷12월)×100h= 100h	100시간×30% = 30h	병가('2.1~3.31)는 60일 미만으로 근무년수 반영
'11년	12개월 (1.1~12.31)	전체(12월÷12월)×100h= 100h	100시간×30% = 30h	-
'12년	12개월 (1.1~12.31)	전체(12월÷12월)×80h= 80h	80시간×30% = 24h	-
'13년	12개월 (1.1~12.31)	전체(12월÷12월)×80h= 80h	80시간×30% = 24h	-

◆ 학습이수 시간

- 산출시점 : 2013. 12.31

구 분	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학습이수시간	484시간	20h	85h	89h	120h	90h	80h
교육훈련기관 이수시간	133시간	0h	25h	7h	31h	40h	30h
집합교육 이수시간	22시간	-	-	-	8h	-	14h

◆ 충족조건 : (학습목표시간 < 학습이수시간) &

(교육훈련기관 의무이수시간 < 교육훈련기관 이수시간) &

(집합교육 의무이수 시간 - '13년 7시간)

- 5년간 총 교육이수시간이 484시간으로 충족요건인 443시간 이상이고,
- 교육훈련기관 이수시간이 133시간으로 충족요건인 124시간 이상으로 충족
- 교육훈련기관 집합교육 시간이 22시간으로 충족요건인 7시간 이상으로 충족

※ 학습목표시간 이수여부는 인력개발과로 문의

3. 경력평정 관련용어 정리

○ 경력평정 가능기간

- 임용권자가 계급별로 경력평정일을 기준으로 경력평정이 가능한 범위를 정한기간

○ 경력평정 제외기간

- 직위해제 · 정직기간 등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

○ 경력평정 대상기간

- 경력평정 가능기간 중 경력평정 제외기간을 뺀 나머지 기간

○ 경력평정 만점도달기간

- 경력평정대상기간 중에 월경력평정점을 곱하여 경력평정 만점(30점)에 도달하는 기간

○ 환산경력기간

- 경력평정 가능기간에서 산정한 경력평정 대상기간을 경력환산율을
경력의 유사성(갑/을/병)에 의하여 재산정한 기간

불임 2

경력평정 평정자 및 확인자

기 관 별		구 分	평 정 자	확인자		
본 청		담당관·과의 주무담당사무관	담당관·과장 (서기관)			
3 급 이 상 사 업 소	상수도 사업본부	본 부	주 무 과 장	부 장		
		4급 이상 사업소	주 무 과 장	소 장		
		5 급 사 업 소	소 장	소 장		
	도 시 기 반 시 설 본부 한 강 사 업 본부		주 무 과 장 (주무담당사무관)	부 장		
	인 재 개 발 원		주무담당사무관	과 장		
	서 울 대 공 원 등 기타사업소		주무과장(부장) 또는 소장			
4 급 사 업 소			주무과장(부장) 또는 소장			
5 급 사 업 소			소 장	소 장		

불임 3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3] 요약

공무원 경력구분 개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1조의6 제2항 관련)

경력 합산율 표

경력	환산율
<p>가. 갑 경력(임기제공무원 경력은 제외한다)</p> <p>1) 같은 직렬의 같은 계급 이상의 경력 2) 법 제2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사람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에 그 특수경력직공무원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3) 같은 계급 이상의 행정직렬 및 세무직렬 상호간의 경력 4) 임용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직렬이 분리·신설되거나 통합되는 경우 분리되기 전의 원래의 직렬 또는 통합되기 전의 직렬에서 근무한 같은 계급 이상의 경력 5)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시보임용이 면제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이 받은 교육훈련기간 6) 「법원조직법」 제72조에 따라 사법연수생으로 수습한 기간</p>	100%
<p>나. 을 경력(임기제공무원 경력은 제외한다)</p> <p>1) 가목3) 및 4)의 경우를 제외한 같은 직군의 같은 계급 이상의 경력 2) 연구직공무원이 제29조제5호에 따라 전직시험에 면제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그 계급 상당 이상의 연구직공무원의 경력 3) 행정직군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같은 계급(상당한 계급을 포함한다) 이상의 외교통상직렬 또는 외무영사직렬공무원의 경력 4) 기술직군 통신직렬 공무원의 경우 같은 계급(상당한 계급을 포함한다) 이상의 외교정보기술직렬공무원의 경력 5) 교육행정직렬의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같은 계급 상당 이상의 교육공무원의 경력 6) 임용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직군이 분리·신설 또는 통합되거나 소속 직군이 변경된 경우 분리·통합되기 전 또는 변경 전의 원래 직군에서 근무한 같은 계급 이상의 경력 7) 신규임용후보자 명부 등재 후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병역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기간(의무복무를 마친 후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승진임용된 사람은 제외한다)</p>	80%
<p>다. 병 경력(8)을 제외한 임기제공무원 경력은 제외한다)</p> <p>1) 직군이 다른 같은 계급 이상의 경력 2) 나목3)부터 5)까지의 경우를 제외한 같은 계급 상당 이상의 특정직공무원의 경력(제2호가 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병역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기간(의무복무를 마친 후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승진임용된 사람은 제외한다)</p>	60%

<p>4) 같은 직군의 바로 아래 계급의 경력</p> <p>5) 기술직군의 경우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현직급과 직무 내용이 비슷한 같은 계급 상당 이상의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경력(나목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6) 임용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직군이 분리·신설 또는 통합되거나 소속직군이 변경된 경우 분리·통합되기 전의 원래 직군에서 근무한 바로 아래 계급의 경력</p> <p>7) 가목2) 및 나목6)의 경우를 제외한 같은 계급 상당 이상의 별정직공무원의 경력(별정직공무원 경력이 있는 사람이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에서 승진에 필요한 최저연수로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정함)</p> <p>8) 같은 계급 이상의 임기제공무원의 경력(임기제공무원 경력이 있는 사람이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에서 승진에 필요한 최저연수로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정함)</p> <p>9) 지방전문경력관 경력(지방전문경력관 경력이 있는 사람이 일반직공무원 임용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에서 승진에 필요한 최저연수로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정함)</p>	
<p>라. 정 경력(임기제공무원 경력은 제외한다)</p> <p>직군이 다른 바로 아래 계급의 경력. 다만, 기술직군의 경우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현 직급과 직무 내용이 비슷한 현 직급의 바로 아래 계급에 상당하는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경력을 포함한다.</p>	30%
<p>* 그 밖의 경력</p> <p>가. 박사학위 소지 경력</p> <p>임용권자가 인정하는 해당 직급의 직무와 직접 관련되는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에서 해당 분야의 전임강사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과 교육기관, 연구기관(석사급 이상의 정규연구직원이 10명 이상인 기관만 해당한다) 또는 대학 부설 연구기관의 정규연구직원으로 해당 분야의 연구업무에 종사한 경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급 공무원: 80퍼센트 • 6급 이하 공무원: 100퍼센트
<p>나. 자격증 소지 경력</p> <p>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규칙으로 정하는 해당 직급의 직무와 직접 관련되는 분야의 자격증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종사한 경력</p> <p>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과 민간기업등의 근무경력</p> <p>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라 특별임용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임용예정 계급 상당 이상의 경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직급의 바로 위 직급의 특별임용기준을 초과하는 경력: 100퍼센트 • 해당 직급의 특별임용기준을 초과하는 경력: 80퍼센트 <p>• 60퍼센트</p>
<p>비고</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 표의 공무원 경력에는 그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의 경력을 포함한다. 2. 이 표 제2호 각 목의 경력은 최초로 임용된 계급에 제직하는 동안으로 한정하여 평정하며, 이에 해당하는 경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각각 평정하되, 경력기간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 중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한 가지만을 평정한다. 3. 이 표 제2호가목 중 대학은 외국의 대학을 포함하며, 교육기관과 연구기관은 외국의 해당 기관을 포함한다. 	

붙임 4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별표 23]

일반직 공무원의 가점대상 자격증 종류와 가점

(제45조제1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가. 5급부터 9급까지

직렬 계급	5급	6급·7급	8급·9급
행정, 사회복지	변호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세무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경영·기술지도사(지도사 자격시험 합격자에 한함)		
행정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전산	기술사(정보관리, 전자계산조직응용,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기사(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산업기사(정보처리, 정보기술,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멀티미디어 콘텐츠제작전문가)
공업 (기계)	기술사(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 유체기계, 전기응용, 공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항공기관, 항공기체, 기계안전, 공장관리, 소방설비, 품질관리, 선박설계, 소음진동, 선박건조, 선박기계), 운송용조종사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전기, 전기공사,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통신, 항공, 열관리, 산업안전, 공정관리, 소방설비(소음진동, 기계분야), 품질관리, 조선, 선박기계, 반도체설계, 무선설비, 방송통신, 교통), 설비보전, 퀘도장비정비 기능장(기계가공, 보일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기계정비, 판금제판, 배관, 전기공사, 전기기기, 전자기기, 통신설비, 항공정비, 가스)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자가용조종사, 항공공장정비사	산업기사[윤활관리, 생산기계, 전산응용가공,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철도차량, 철도동력차기판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 제관, 농업기계, 배관설비, 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전자회로설계, 디지털제어, 정보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무선통신, 항공, 열관리, 산업안전, 공정관리, 소방설비(소음진동, 기계분야), 품질관리, 영사, 교통, 조선, 생산기계, 전자부품장착(SMT)]

계급 직렬	5급	6급·7급	8급·9급
공업 (전기)	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소방설비, 품질관리, 공업계측제어, 전자용, 전자계산기, 전자계산조작응용, 원자력발전, 핵연료, 방사선관리) 방사선취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원자로조종감독자,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 원자로조종사	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관리, 소방설비(전기분야), 승강기,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작응용, 원자력, 열관리] 기능장(전기공사, 전기기기, 전자기기)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핵연료물질취급자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산업안전, 전기철도, 소방설비(전기분야), 품질관리, 승강기,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반전자회로설계, 디지털제어, 전자계산기조작응용, 열관리]
공업 (화공)	기술사(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세라믹, 고분자제품, 화공안전, 가스, 식품, 품질관리)	기사(공업화학, 화약류제조, 화공, 세라믹, 산업안전, 가스, 식품, 품질관리, 화학분석) 기능장(위험물관리, 가스)	산업기사(공업화학, 화약류제조, 세라믹, 고분자제품제조, 위험물관리, 산업안전, 가스, 식품, 품질관리, 화공)
농업 (농업)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생사)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생산기사 2급(1999년3월27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함)	산업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식품, 유기농업)
농업 (축산)	기술사(축산, 식품), 수의사	기사(축산, 식품)	산업기사(축산, 식품) 가축인공수정사
녹지	기술사(종자, 산림, 임산가공, 농화학, 조경, 시설원예)	기사(종자, 산림(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농화학, 조경, 시설원예, 화훼장식) 기능장(산림)	산업기사(종자, 산림,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수의	수의사		
보건	기술사(산업위생관리, 식품,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방사선관리,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기사(산업위생관리, 식품,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임상심리사 1급, 응급구조사 1급,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의무기록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영양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간호사, 조산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산업기사(산업위생관리, 식품,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임상심리사 2급, 응급구조사 2급,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의료기술	기술사(방사선관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기사(응급구조사 1급, 의지·보조기)	산업기사(응급구조사 2급)
의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무	약사, 한의사, 한약사		
간호		전문간호사, 조산사, 사회복지사 1급, 정신보건전문요원(정신보건간호사1급)	사회복지사 2급, 정신보건전문요원(정신보건간호사2급)

직렬	계급	5급	6급·7급	8급·9급
환경		기술사(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고분자제품,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의사, 약사, 수의사	기사(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공업화학, 건설재료시험, 토목, 조경, 산림(산림경영, 산림공학), 해양환경, 농화학, 산업위생관리, 응용지질, 기상, 자연생태복원, 토양환경) 기능장(산림) 위생사	산업기사(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공업화학, 건설재료시험, 토목, 조경, 산림, 산림경영, 산림공학,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자연생태복원)
시설(토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지질 및 지반, 교통)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응용지질, 교통, 콘크리트)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콘크리트)
시설(건축)		기술사(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전기설비, 건설안전, 소방설비, 소방) 건축사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산업기사(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적, 건축목공, 목재창호,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시설(지적)		기술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	기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	산업기사(지적, 지적기능,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방송통신(통신기술)		기술사(정보통신, 전자계산기, 전자응용)	기사(정보통신, 무선통신, 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전파통신, 전파전자) 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	산업기사(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무선통신, 방송통신, 전자, 정보처리, 정보기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파전자, 전자계산기, 전파통신)
위생			기술사(식품,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기사(식품,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위생사, 영양사, 오물처리사 1급	산업기사(식품,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오물처리사 2급
간호조무			간호사	
토목운영			기술사(토질및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및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지질 및 지반, 교통)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응용지질, 교통)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축운영			기술사(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산업기사(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

		<p>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전기설비, 건설 안전, 소방설비, 소방)</p> <p>기사(건축설비, 건축, 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p> <p>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p> <p>건축사</p>	<p>축, 조적, 건축목공, 목재창호,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p>
통신운영		<p>기술사(정보통신)</p> <p>기사(정보통신, 전파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무선통신, 전자)</p> <p>기능장(통신설비, 전자기기)</p>	<p>산업기사(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통신, 무선설비, 무선통신, 방송통신, 전자, 정보처리, 정보기술)</p>
전기운영		<p>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소방설비, 품질관리)</p> <p>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소방설비<전기분야>, 품질관리, 승강기)</p> <p>기능장(전기공사, 전기기기)</p>	<p>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소방설비<전기분야>, 품질관리, 승강기)</p>
기계운영		<p>기술사(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 유체기계, 정보통신, 기계안전, 공장관리, 소방설비, 품질관리)</p> <p>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정보통신, 열관리, 산업안전, 공정관리, 소방설비<기계분야>, 품질관리)</p> <p>기능장(기계가공, 보일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기계정비, 판금제판, 배관)</p>	<p>산업기사(윤활관리, 컴퓨터응용가공(생산기계), 전산응용가공),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철도차량, 철도동력차기환경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 제관, 농업기계, 배관설비, 정보통신, 열관리, 산업안전, 공정관리, 소방설비 <기계분야>, 품질관리, 영사)</p>
화공운영		<p>기술사(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세라믹, 고분자제품,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p> <p>기사(공업화학, 화약류제조, 화공, 세라믹, 산업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p> <p>기능장(위험물관리, 가스)</p>	<p>산업기사(공업화학, 화약류 제조, 세라믹, 고분자제품 제조, 위험물관리, 산업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p>
가스운영		<p>기술사(가스, 화학장치설비, 화공안전)</p> <p>기사(가스, 화공, 산업안전)</p> <p>기능장(가스, 위험물관리)</p>	<p>산업기사(가스, 위험물관리고분자제품 제조)</p>
선박항해 운영 선박기관 운영		<p>기술사(선박설계, 선박건조, 선박기계, 기계제작, 산업기계)</p> <p>기사(조선, 일반기계, 항로 표지) 1·2·3·4급 항해사 1·2·3·4급 기관사</p>	<p>산업기사(조선, 컴퓨터응용가공(생산기계), 항로표지) 5·6급 항해사 5·6급 기관사</p>
농림운영		<p>기술사(종자, 산림, 축산, 임산가공, 농화학, 생사, 조경, 식품)</p>	<p>산업기사(종자, 산림,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축산, 임산</p>

		기사(종자, 산림(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농화학, 조경, 식품, 생물공학) 기능장(산림)	가공, 조경, 식품)
보건운영		기술사(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 관리) 위생사, 작업치료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수의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간호사, 조산사, 의무기록사, 영양사, 임상병리사 1급, 응급구조사 1급	산업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임상심리사 2급, 응급구조사 2급

주 : 단, 행정직렬의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취득 후 직급별로 2년 이상 해당직무에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가점을 부여하고, 해당직무는 “여성가족정책실, 복지건강실, 시립병원”의 업무관할로 한정한다.

나. 연구사

직렬 계급	연 구 사
공업연구	기술사(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 유체기계,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철야금, 비철야금, 비파괴검사, 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세라믹, 고분자제품,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공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선박설계, 선박건축, 선박기계, 항공기관, 항공기체, 방사, 제포, 방적, 생사, 염색가공, 의류, 지하자원개발, 탐사, 지하자원처리, 화약류관리, 전자계산조작응용, 해양, 지질 및 지반, 제품디자인, 원자력발전, 핵연료, 방사선관리,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소방, 가스, 공장관리, 품질관리, 포장, 식품)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기계공정설계, 차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시출금형설계, 농업기계, 금속,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공업화학, 화약류제조, 화공, 세라믹,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조선, 항공, 방사, 방적, 염색가공, 의류, 지하수,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전자계산기조작응용,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응용지질,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원자력, 열관리,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공정관리, 품질관리, 포장, 광학, 승강기, 식품, 화학분석)
보건연구	기술사(식품,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산업위생관리, 방사선관리) 기사(식품,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산업위생관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헌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간호사, 조산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의무기록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환경연구	기술사(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고분자제품,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지질 및 지반,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기사(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공업화학, 건설재료시험, 토목, 조경, 산림(산림경영, 산림공학), 농화학,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응용지질, 기상) 의사, 수의사, 약사, 위생사

다. 지도사

계급 직렬	지 도 사
농촌지도	<p>기술사(종자, 시설원예, 산림, 축산, 임산가공, 농화학, 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 유체기계,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생사, 조경, 지적, 기계안전, 건설안전, 식품,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염색가공,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p> <p>기사(종자, 시설원예, 산림(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농화학,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산업안전, 건설안전, 식품,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생물공학, 유기농업, 섬유물리, 섬유화학,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p> <p>수의사, 청소년지도사, 평생교육사 1·2급, 생산기사 2급(1999년 3월 27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함)</p>

2. 삭제 <2014.7.31>

3. 자격증의 등급별 가점

구 분	평 정 점
해당 직렬의 해당 계급 또는 상위계급에서 인정하는 자격증	0.5
해당 직렬의 바로 하위계급에서 인정하는 자격증	0.25

불임 5

경력평정 관련 법령

「지방공무원 임용령」 [시행 2014.2.7] [대통령령 제25138호, 2014.2.5, 일부개정]

제31조의6(경력평정) ① 제33조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한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경력을 평정하여 승진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0>

② 경력평정은 평정 기준일부터 경력평정 대상 공무원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이상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계급별 평균 승진소요연수를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하는 기간 중 각각 실제로 직무에 종사한 기간에 대하여 별표 3의 환산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환산경력기간에 안전행정부령 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평정점을 곱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은 각각 휴직 또는 직위해제 당시의 직급에서 직무에 종사한 것으로 보아 평정한다. <개정 2011.3.7, 2013.3.23, 2014.2.5>

1. 법 제63조에 따른 휴직 중 다음 각 목의 기간

- 가. 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과 법 제63조제1항제2호·제4호·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
- 나. 법 제63조제2항제2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이 경우 휴직 당시의 직급에서 직무에 종사한 것으로 보는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 다. 법 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 다만,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셋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

2. 법 제65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그 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징계의결요구에 대하여 관할 인사위원회가 징계하지 않기로 의결한 경우를 포함한다)와 법 제65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그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 그 직위해제기간

③ 임용권자는 제2항의 경력평정기간을 소속 공무원들이 알 수 있도록 예고하여야 하며, 그 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된 기준은 그 변경일의 1년 후부터 적용한다.

④ 경력평정의 시기, 방법, 기간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 또는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2.6]

제31조의7(기구 개편 등에 따른 경력평정의 특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5조 및 제36조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에 따른 기구 축소 또는 정원 감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남는 현원의 해소를 위하여 전직하여 재배치된 공무원에 대한 경력을 평정할 때에는 전직 전의 직급 및 그 바로 아래 직급의 경력은 전직 후의 직급 및 그 바로 아래 직급의 경력으로 본다. <개정 2012.2.29>

[전문개정 2009.2.6]

제32조(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임용권자는 승진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점을 70퍼센트로 하고, 제31조의6에 따른 경력평정점을 30퍼센트로 한 비율에 따라 승진후보자 명부를 승진 예정 직급별로 작성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기관 및 직무의 특성을 반영하여 근무성적평정점은 10퍼센트의 범위에서 가산하여 조정할 수 있고,

경력평정점은 10퍼센트의 범위에서 감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한 내용은 그 조정일부터 1년이 지난 날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3.11.20\]](#)

② 제1항에 따른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을 위한 평정에서 공무원이 자격증이 있거나 도서·벽지 등 특수한 지역 또는 교류직위 등 특정한 직위에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탁월한 근무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을 줄 수 있고,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감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9.21\]](#)

③ 제1항의 가점 및 감점 평정기준과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 또는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④ 법 제39조제5항 단서에 따른 기술직렬 6급 이하 공무원의 시·도 단위별 승진후보자 명부(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도지사가 해당 도의 관할구역에서 권역별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승진후보자 명부를 말한다)는 제1항에 따라 임용권자별로 작성한 승진후보자 명부의 총 평정점 순위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12.9.21\]](#)

⑤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시험성적 순위에 따라 작성되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류별, 근무희망 기관별, 근무희망 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승진후보자 명부에 관하여는 법 제36조제4항의 유효기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6.15\]](#)

⑦ 임용권자는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이 요구하면 4급 공무원으로의 승진후보자 명부의 복사본을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가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면 시·도지사를 거쳐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⑧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소속 기관별, 지역별 또는 직무의 종류별로 분할하여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수 있고, 직무 내용이 비슷하고 인원수가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직렬을 통합하여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한 내용은 그 변경일부터 1년이 지난 날부터 적용되며,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적용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6]

제33조(승진소요 최저연수) ① 공무원이 승진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0\]](#)

1. 3급 이상: 2년 이상

2. 4급: 3년 이상

3. 5급: 4년 이상

4. 6급: 3년 6개월 이상

5. 7급: 2년 이상

6. 8급: 2년 이상

7. 9급: 1년 6개월 이상

② 제1항의 기간에는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징계처분기간과 제34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다만, 징계의결요구일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징계처분요구일부터 징계처분일 전일 까지의 기간(직위해제기간과 겹치는 기간은 제외한다), 시보임용 기간 및 제31조의6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시킨다. [\[개정 2009.2.6, 2011.3.7\]](#)

③ 삭제 [\[1984.12.31\]](#)

④ 삭제 [\[2013.11.20\]](#)

⑤ 강등 또는 강임되었던 공무원이 원래의 계급으로 승진된 경우에는 강등 또는 강임 전의 재직기간은 현재 계급의 재직연수에 포함시킨다. [\[개정 2009.2.6, 2009.3.31\]](#)

⑥ 퇴직한 지방공무원 또는 국가공무원이 퇴직 당시의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퇴직 전의 재직기간 중 현재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현재 계급의 재직연수에 포함시키되,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임용하려는 날부터,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일부터 10년

이내의 재직기간에 한정한다. <개정 2009.2.6, 2014.2.5>

⑦ 법 제2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인 사람이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후에 다시 퇴직 당시 재직한 직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임용된 경우에는 재임용되기 전에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이 정한 특수한 업무에 근무한 특수경력직공무원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시킨다. 이 경우 재임용된 계급보다 상위 계급에 해당하는 계급으로 근무한 특수경력직공무원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의 경력은 재임용된 계급의 재직기간에만 포함시킨다. <개정 2009.2.6, 2013.3.23, 2013.11.20>

⑧ 연구및지도직규정 별표 1의 각 직렬의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기간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2009.2.6>

⑨ 지방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급 상당 이상으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은 제1항에 따른 기간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2009.2.6, 2013.3.23, 2013.11.20>

⑩ 「법원조직법」 제72조에 따라 사법연수원의 연수생으로 수습한 기간은 제1항에 따른 4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포함시킨다. <개정 2009.2.6>

⑪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과 제38조의15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근무기간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제38조의15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이 해당 계급에서 근무한 기간은 1년의 범위에서 제1항의 기간에 전부 포함한다. <개정 2013.12.30>

⑫ 강등 또는 강임된 공무원이 강등 또는 강임된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강등 또는 강임된 계급의 재직연수에 포함시킨다. <신설 2009.3.31>

[전문개정 1981.6.24]

[제목개정 2009.2.6]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시행 2013.12.12] [안전행정부령 제37호, 2013.12.12, 일부개정]

제3조(평정 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성과계약 등의 평가는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한다.

1. 4급 이상 공무원

2. 연구관·지도관(제2항에 해당하는 연구관 및 지도관은 제외한다)

3.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의2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5급 이하 공무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경력평정은 정기평정과 수시평정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1. 5급 이하 공무원

2. 연구직·지도직공무원[「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지도직규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삭제 <2013.12.12>

③ 제2항에 따른 정기평정은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연 2회 실시되며,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정 기준일을 달리 정할 수 있고, 실시 횟수를 연 1회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평정 대상기간은 정기평정을 연 2회 실시하는 때에는 6개월로 하고 연 1회 실시하는 때에는 1년으로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수시평정은 정기평정 후 제31조제1항에 따른 승진후보자 명부의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근무성적(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조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하고, 경력에 대해서는 정기평정 기준일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한다.

[전문개정 2013.1.18]

제12조(경력 및 가산점 평정의 평정자와 확인자) 경력평정 및 가산점 평정의 확인자는 평정대상 공무원의 임용권자 또는 임용권자가 지정하는 사람이 되고, 평정자는 확인자 소속 기관의 인사담당관이 된다.

[전문개정 2013.1.18]

제13조(경력 및 가산점 평정의 서식) ①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력평정과 제23조, 제24조 및 제25조의2에 따른 가산점 평정은 별지 제5호서식의 경력 및 가산점 평정표에 따라 실시한다.

② 임용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경력 및 가산점 평정표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1.18]

제14조(경력평정의 대상 및 방법) ① 경력평정은 제3조에 따른 평정기준일 현재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한 5급 이하 공무원·연구사 및 지도사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3.12.12>

② 경력평정은 해당 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인사기록카드에 적힌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재사항을 조회·확인한 후 평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1.18]

제15조(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경력 등의 상당계급) 영 별표 3 및 연구·지도직규정 별표 4에 따른 특정직 또는 별정직 공무원경력의 일반직공무원의 상당계급 및 일반직공무원경력 상호간의 상당계급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별표 1에 규정되지 아니한 특정직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12.12>

제16조(경력의 평정점) ① 경력의 총평정점은 30점을 만점으로 한다.

③ 영 제31조의6제2항 및 연구·지도직규정 제19조제2항에 따른 평정점은 별표 2와 같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운용 여건을 고려하여 총정원의 3퍼센트 이내에서 경력평정을 할 때 가산점을 부여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직위를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직위에 대한 가산점은 총평정점의 만점의 범위에서 해당 직급의 경력에 대하여 1년을 초과하는 1개월마다 0.02점을 가산하여 평정하되, 가산되는 점수는 1점을 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3.1.18]

제17조(경력평정기간의 계산) ① 영 제31조의6제2항 및 연구·지도직규정 제19조제2항에 따른 환산경력기간은 경력평정 대상기간의 각 연·월·일별로 영 별표 3 및 연구·지도직규정 별표 4에 따른 환산율을 곱하여 계산하되,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② 별표 2에 따른 환산경력개월 수는 제1항에 따른 환산경력기간을 개월 수로 환산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1년은 12개월로, 1개월은 30일로 환산하되, 남은 일수가 15일 이상이면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이면 산입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3.1.18]

제23조(자격증 등의 가산점) ① 5급 이하 공무원·연구사 및 지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증 또는 이수증을 소지한 경우에는 영 제32조제2항 및 연구·지도직규정 제14조제2항에 따라 별표 3에 따른 점수를 가산점으로 평정한다. <개정 2013.12.12>

1. 「국가기술자격법」,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국가자격증 및 「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가 공인한 민간자격증 중 임용권자가 담당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자격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해당 자격증에 대해서는 가산점 평정을 할 수 없다.

가.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격증 소지자로서 영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의 필기시험을 면제받은 사람의 해당 자격증

- 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증 소지를 의무화하는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에 응시하여 임용된 사람의 해당 자격증
-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자격증
- 3.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 중 임용권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자격증과 동일하거나 동등하다고 인정하는 자격증
- 4. 별표 3 제1호에 따른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확인서
 -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자격증이 둘 이상인 경우와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평정대상으로 하고, 공무원으로 재직함으로써 취득한 자격증에 대해서는 평정하지 아니한다.
 - ③ 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에 대한 가산점은 그 확인서의 유효기간에 한정하여 가산점 평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1.18]

제24조(특수지 근무경력의 가산점 등) ① 5급 이하 공무원·연구사 및 지도사가 해당 계급에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른 특수지의 해당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연구사·지도사의 경우에는 6급 및 7급 공무원으로 특수지의 해당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영 제32조 제2항 및 연구·지도직규정 제1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점수 이내에서 가산점으로 평정한다. 이 경우 국가공무원 재직 시에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른 특수지의 해당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은 지방공무원의 해당 계급에서 근무한 경력으로 보아 이를 평정한다.

<개정 2013.12.12>

- 1. 특수지 특지·갑지(국가공무원의 경력인 경우에는 가지·나지)에서 근무한 경력: 1개월마다 0.025점
- 2. 특수지 을지(국가공무원의 경력인 경우에는 다지)에서 근무한 경력: 1개월마다 0.018점
- 3. 특수지 병지(국가공무원의 경력인 경우에는 라지)에서 근무한 경력: 1개월마다 0.013점
- ② 영 제27조의5제2항에 따른 인사교류 계획에 따라 교류 임용된 공무원이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최초 교류 임용된 날부터 1개월마다 0.1점의 가산점을 부여하여 평정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관할구역 내 지방자치단체의 교류 여건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하여 1개월마다 0.1점의 범위에서 가산점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③ 제1항에 따른 가산점은 총 0.63점을, 제2항에 따른 가산점은 2.40점을 초과하여 평정할 수 없다.
- ④ 제1항에 따른 가산점은 정기평정기준일 현재까지의 근무경력에 대하여 개월 수 단위로 계산하여 평정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근무경력기간 중 휴직·직위해제 및 정직 기간이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은 평정 대상기간에서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3.1.18]

제25조의2(실적 가산점) ① 임용권자는 제6조제2항에 따른 목표달성을 평정점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거나 평정 대상기간 중 탁월한 근무실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 제32조제2항 및 연구·지도직규정 제14조제2항에 따라 5점의 범위에서 실적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실적 가산점을 부여할 때에는 그 부여 요건과 기준 등을 평정 대상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정하여 평정대상 공무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1.18]

제26조(경력 및 가산점 평정 결과의 제출 및 열람) ① 경력평정 및 가산점 평정의 평정자와 확인자는 제13조에 따른 경력 및 가산점 평정표 부본(副本)을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경력평정 및 가산점 평정의 평정자와 확인자는 평정대상 공무원이 요구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의 경력 및 가산점 평정표를 보여 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3.1.18]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3.12.12] [대통령령 제24893호, 2013.12.4, 일부개정]

제12조(승진소요최저연수) ① 연구관이나 지도관으로 승진임용할 수 있는 사람은 재직연수가 5년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0.12.13>

② 삭제 <2008.7.23>

③ 제1항의 재직연수를 계산할 때에는 별표 3의 재직연수 환산율표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의 경력 및 유사경력을 환산하여 산입하고, 별표 3에 규정되지 아니한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의 경력은 임용령 제33조제7항 및 제9항에 따라 재직연수에 산입한다. 다만, 같은 기간의 경력은 이중으로 산입할 수 없다. <개정 2010.12.13, 2013.12.4>

④ 제1항의 재직연수와 제3항의 공무원경력 및 유사경력에는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징계처분기간 및 임용령 제34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은 산입한다. <개정 2010.12.13>

1. 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과 같은 항 제2호 · 제4호 · 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

2. 법 제63조제2항제2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의 50퍼센트

3. 법 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이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

4. 법 제65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이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 인사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를 포함한다)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이 법원에서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의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는 그 직위해제기간

5. 시보임용 기간

⑤ 제3항에 따른 재직연수에 산입하는 경력은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재임용일(별표 3의 유사경력인 경우에는 임용일을 말한다)부터 10년 이내의 경력으로 한다. <신설 2010.12.13>

[제목개정 2010.12.13.]

제19조(경력평정) ① 제12조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연구사 및 지도사에 대해서는 그 경력을 평정하여 승진임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3>

② 경력평정은 평정기준일부터 경력평정대상 공무원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이상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계급별 평균 승진소요연수를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하는 기간 중 실제로 직무에 종사한 기간("경력평정대상기간"이라 한다)에 대하여 별표 4의 환산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경력기간("환경경력기간"이라 한다)에 안전행정부령 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평정점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제12조제4항 각 호에 따라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되는 기간은 각각 휴직 또는 직위해제 당시의 직급에서 직무에 종사한 것으로 보아 평정한다. <개정 2010.12.13, 2013.3.23>

③ 삭제 <1996.3.23>

④ 삭제 <1996.3.23>

⑤ 삭제 <1996.3.23>

⑥ 경력평정의 시기 · 방법 · 기간계산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 또는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13, 2013.3.23>

⑦ 임용권자는 제2항의 경력평정기간을 소속 공무원들이 알 수 있도록 예고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된 기준은 그 변경일 1년 후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0.12.13>

「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 2013.12.12] [대통령령 제24857호, 2013.11.20, 제정]

제12조(경력평정) ① 개정지방공무원법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종전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경력평정을 위한 환산경력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환산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1. 관리운영직군 또는 신설직렬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경우

 가. 동일 계급 이상의 기능직공무원 경력: 100퍼센트

 나. 바로 하위 계급의 기능직공무원 경력: 60퍼센트

2. 관리운영직군에서 제3조에 따라 전직임용된 경우

 가. 동일 계급 이상의 기능직공무원 경력: 60퍼센트

 나. 관리운영직군 일반직공무원 경력: 60퍼센트

② 개정지방공무원법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종전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경력평정을 위한 환산경력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환산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환산경력기간은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신설직렬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경우: 임용계급에 상당하는 종전 별정직공무원 상당 계급 이상의 경력 60퍼센트

2. 제9조제3항에 따라 전담직위 지정이 해제된 경우

 가. 임용계급에 상당하는 종전 별정직공무원 상당 계급 이상의 별정직공무원 경력: 60퍼센트

 나. 임용계급에 상당하는 종전 별정직공무원 상당 계급 이상의 전담직위 공무원 경력: 60퍼센트

제13조(승진소요최저연수) ① 종전 기능직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종전의 경력은 관리운영직군 및 신설직렬에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 및 근속승진기간에 산입한다.

1. 일반직 6급: 기능6급 이상의 경력

2. 일반직 7급: 기능7급 이상의 경력

3. 일반직 8급: 기능8급 이상의 경력

4. 일반직 9급: 기능9급 이상의 경력 및 법 제10700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제4조제1항의 개정 규정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기능직 기능10급으로 근무한 경력

② 제3조에 따라 전직임용된 공무원의 종전 기능직공무원 및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으로서의 경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전직임용된 직급에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 또는 근속승진기간에 산입한다.

1. 일반직 6급에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 기능6급 이상 및 관리운영직군 6급 이상의 경력을 합한 경력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경력. 이 경우 해당 계급의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 1까지 인정한다.

2. 일반직 7급에서의 근속승진기간: 기능7급 이상 및 관리운영직군 7급 이상의 경력

3. 일반직 8급에서의 근속승진기간: 기능8급 이상 및 관리운영직군 8급 이상의 경력

4. 일반직 9급에서의 근속승진기간: 기능9급 이상의 경력, 법 제10700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기능직 기능10급으로 근무한 경력 및 관리운영직군 9급 이상의 경력

③ 종전 별정직공무원이 2013년 12월 12일에 신설직렬로 임용된 경우 종전의 별정직 경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승진소요최저연수 또는 근속승진기간에 산입한다. 이 경우 종전 별정직공무원의 일반직공무원 상당 계급은 별표 2와 같다.

1. 일반직 6급 이상에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임용계급에 상당하는 종전 별정직공무원 상당 계급 이상의 경력을 합한 경력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경력. 이 경우 해당 계급의 승진소요최저연수 2분의 1까지 인정한다.

2. 일반직 7급에서의 근속승진기간: 별정직 7급 상당 이상의 경력

3. 일반직 8급에서의 근속승진기간: 별정직 8급 상당 이상의 경력
 4. 일반직 9급에서의 근속승진기간: 별정직 9급 상당 이상의 경력
- ④ 종전 별정직공무원이 2013년 12월 12일에 전담직위 공무원이 된 후 제9조제3항에 따라 전담직위 지정이 해제된 경우 종전의 별정직 및 전담직위에서의 근무경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승진소요최저연수 또는 근속승진기간에 산입한다.
1. 일반직 6급 이상에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임용계급에 상당하는 종전 별정직공무원 상당 계급 이상의 경력과 전담직위 경력을 합한 경력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경력. 이 경우 해당 계급의 승진소요최저연수 2분의 1까지 인정한다.
 2. 일반직 7급에서의 근속승진기간: 별정직 7급 상당 이상 및 전담직위에서의 7급 이상의 경력
 3. 일반직 8급에서의 근속승진기간: 별정직 8급 상당 이상 및 전담직위에서의 8급 이상의 경력
 4. 일반직 9급에서의 근속승진기간: 별정직 9급 상당 이상 및 전담직위에서의 9급 이상의 경력